

「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김성기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

1. 제안이유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붕 해체 정의를 취지에 맞게 재정의(안 제2조)

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에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서 ‘건축물’로 변경하여 비주택(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붕 해체의 정의를 조례의 취지와 적합하게 수정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주택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